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34
----------	---------

제출연월일 : 2021년 4월 일

제출자 : 강서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 개정 취지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 나.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다.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광고비용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라.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주소정보위원회”로 명칭 변경(안 제6조 ~ 제12조)
- 마. 주소정보의 홍보 및 교육 조항을 규정함(안 제14조)
- 바. 토지 등의 출입증 및 발급 대장(안 제16조 및 별지 제1, 2호 서식)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명주소법」 (법률 제17574호, 2020. 12. 8. 공포, 2021. 6. 9.시행)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1조, 제33조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26조, 제54조, 제74조, 제7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1. 3. 3.~3. 23.) : 의견 없음

2) 규제사전심사 결과 :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4)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건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구청장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5항 및 영 제54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을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구청장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4조(광고의 비용) 구청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를 할 때에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 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는 구청장이 별도로 산정한다.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표기하는 위치표시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 하는 사업
4. 구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보급
5. 그 밖에 구청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 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

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의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공제가입) 구청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주소정보의 홍보·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방위·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위탁) ① 구청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영 제5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영 제59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영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 외에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토지 등의 출입증) ① 영 제75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발급하거나 반납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앞 쪽)

제 호

토지·건물등·시설물 출입증

사 진
 3cm×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
 로 뒤 그림 없이 6개
 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60mm×90mm [백상지 150g/m²]

(색상: 연하늘색)

(뒤 쪽)

토지·건물등·시설물 출입증

소속/직급(직위):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위 사람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5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토지·건물등·시설물에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 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토지 · 건물등 · 시설물 출입증 발급 대장

발급 번호	소속/ 직급(직위)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발급일	발급사유	사진	수령인/ 수령일	반납인/ 반납일	폐기인/ 폐기일

210mm×297mm[백상지 80g/m²]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 시 예상되는 비용 없음

4. 작성자: 부동산정보과장 채 군 석

(담당: 시설8급 박천기 / ☎ 2600-6477)

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 개정 취지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 나.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다.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및 광고비용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라.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주소정보위원회”로 함.(안 제6조~제12조)

□ 검토의견

- 동 개정안은 상위법 전부개정에 따라 ‘시군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를 반영하여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평가번호	2021 - 9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직급	행정7급	성명	이경민
입안주무부서	부동산정보과	통보(조치)일		2021. 3. 15.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개정안 전부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서울강서008			
정책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서명	부동산정보과		
	담당자명	박친기	전화번호	02-2600-6895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3월 4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부동산정보과)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574호, 2020. 12. 8.공포, 2021.6. 9.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 등이 전부개정예정임에 따라 조례 전반에 대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 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03월 08일

서울특별시강서구생활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최은영/02-2600-6762)

부동산정보과장 귀하

□ 도로명주소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74호, 2020. 12. 8, 전부개정]

제9조(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 군수·구청장은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거나 구조·구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주(支柱) 또는 시설(이하 “지주등”이라고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에 지주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위치에 맞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지주등에 표기하여야 한다.

1. 가로등·교통신호등·도로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
2. 전주 및 도로변 전기·통신 관련 시설

③ 및 시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군수·구청장은 지주등의 본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하는 데 지주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주등을 사용하려면 미리 그 지주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주등의 사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지주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3항에 따라 사용되는 지주등을 교체·이전·설치·철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장소와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건물번호의 부여) ① 건물등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자는 건물등에 대한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검사 등을 말한다) 전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건물등의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임차인(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도로명주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제1항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2항에 따른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 및 임차인에게 고지하며,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물번호의 부여 기준·절차·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건물번호의 변경 등) ① 건물등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물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건물번호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건물등의 증축·개축 등으로 건물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주소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건물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로명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물번호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소유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거주·활동의 종료 등으로 인하여 건물번호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물번호 폐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물등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도로명주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건물번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물번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 및 임차인에게 고지하며,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물번호의 변경과 폐지의 기준·절차·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도로명주소의 사용 등) ①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한다.

②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표기 및 위치 안내를 할 때에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및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상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의 표기
2. 각종 인허가 등 행정처분 시 주소 표기
3. 공공기관의 주소 표기
4. 공문서 발송 시 주소 표기
5. 위치안내표시판의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
6.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
7. 그 밖에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와 관련된 사항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갖추어 두거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의 주소를 도로명주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명주소로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로 표기할 것을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도로명주소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이 아닌 자는 그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도로명주소로 표기하지 아니한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표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는 것으로 본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제6항, 제8조제5항,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변경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이 갖추어 두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부상의 주소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22조(국가기초구역 등의 설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각 국가기초구역마다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 등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전국 단위로 국가기초구역번호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도별로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를 배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를 통보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해당 시·도 단위로 국가기초구역번호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시·군·자치구별로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를 배정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배정받은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에 따라 국가기

초구역을 설정하고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설정하고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기초구역 또는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제5항에 따라 고시된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계구역, 우편구역 및 관할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의 기본단위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초구역의 설정·변경·폐지 및 국가기초구역번호의 부여·변경·폐지의 기준과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국가지점번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점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국가지점번호는 구조·구급 활동 등의 위치 표시로 활용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철탑, 수문, 방파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구조·구급 및 위치 확인 등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⑤ 공공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시설물에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제4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지점번호가 적절한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표기·확인 방법 및 절차,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사물주소)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사물주소를 부여할 수 있다. 사물주소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육교 및 철도 등 옥외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2. 옥외 대피 시설
3. 버스 및 택시 정류장
4. 주차장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치 안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

-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물의 위치확인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사물주소를 부여·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물주소를 부여·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사물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고지받은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물주소판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물주소판의 제작·설치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은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물주소의 부여·변경·폐지 기준 및 절차, 사물주소판의 설치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주소정보기본도 등의 작성 및 활용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공부 등을 활용하여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도면(이하 “주소정보기본도”라 한다)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소정보기본도를 이용하여 주소정보를 안내할 목적으로 작성한 지도(이하 “주소정보안내도”라 한다)를 제작·배포하거나 주소정보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정보안내도와 주소정보안내판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는 주소정보안내도 및 주소정보안내판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광고의 게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의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광고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 ⑤ 주소정보를 이용한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그 밖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소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요청 받은 주소정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소정보의 내용을 제외하거나 사용 범위를 제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안보나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 비공개사항인 경우

⑦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요청 받은 주소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소정보 안내를 목적으로 요청하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⑧ 제4항의 광고에 따른 수입 및 제7항의 주소정보 제공에 따른 수입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⑨ 주소정보기본도, 주소정보안내도 및 주소정보를 이용한 제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지도로 보지 아니한다.

⑩ 누구든지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 없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된 주소정보기본도 및 주소정보안내도를 국외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 정부와 주소정보안내도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항 단서에 따라 주소정보기본도 및 주소정보안내도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국가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비공개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⑫ 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작성 방법, 주소정보안내판의 설치 장소와 규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주소정보 사용 지원) ① 공공기관의 장은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산업 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주소정보위원회) ①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주소정보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주소정보위원회를 두며, 시·군·자치구에 시·군·구주소정보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시·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군·구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에 따른 시·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군·구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1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손해배상 공제 가입,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3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26조(건물번호판의 신청 및 설치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물번호의 부여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물번호판의 교부를 함께 신청하거나 건물번호판을 직접 제작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설치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진 경우에는 훼손되거나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신청을 하거나 건물번호판을 직접 제작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설치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 또는 재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건물번호판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건물번호를 부여·변경하거나 고지한 날

2.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하거나 재교부하는 건물번호판 제작 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4조(사물주소판의 신청 및 교부)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물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물주소판의 교부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②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사물주소의 부여·변경 사실을 고지받은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물주소판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물주소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사물주소판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사물주소판을 재교부 받으려는 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물주소판의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사물주소판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물주소판을 교부 또는 재교부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부하는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신청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74조(위임·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

1. 도로명(도로구간의 설정 및 기초번호의 부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부여·변경의 신청에 관한 사항
2. 서면 동의에 관한 사항
3. 고지에 관한 사항(제32조제4항에 따른 고지는 제외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배포 및 주소정보안내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4. 제59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제63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
6.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③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재교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배포
4.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5.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6. 제49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7. 제5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8. 제59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정하는 업무

④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3.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소정보와 관련하여 설립을 인가한 비영리 법인

제75조(토지 등의 출입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폐지, 국가지점번호의 부여·변경·폐지, 사물주소의 부여·변경·폐지 및 주소정보시설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건물등 또는 시설물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그 토지·건물등·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의 승낙 없이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증을 증표로 대신 사용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